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창군의회	질문위원	장문혁 위원	
답 변 자	평창군수 (민원봉사과)	답변일자	질의	2011년 06월 21일
			답변	2011년 06월 21일
회 의	제17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

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하여

지원근거 및 지급기준

- 지원근거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(재정지원)
- 지급기준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(손실보상금계산)

2011년 지원사업 세부 내역 (단위:천원)

구분	계	벽지노선	오지도서교통	비수익노선	비고
합계	839,281	166,478	36,000	636,803	
군비	700,000	41,535	20,034	538,431	
도비	139,281	24,943	15,966	98,372	1차분

※ 도비보조금 확정시기 : 1차분 4월/ 2차분 12월

※ 전년대비 군비증액 : 100,000천원(유가상승분 반영)

- 유가상승분 반영액 : 최근 2년('09, '10) 대비 손실차액 124,515천원

※ 재정지원 과목 889,281천원중 50,000천원은 교통카드도입 사업비임

2010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 (단위:천원)

구분	계	벽지노선	오지도서교통	비수익노선	비고
합계	812,193	195,499	36,000	580,694	
군비	589,367	153,927	18,700	416,740	
도비	222,826	41,572	17,300	163,954	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창군의회	질문위원	장문혁 위원	
답 변 자	평창군수 (민원봉사과)	일 자	질의	2011년 06월 21일
			답변	2011년 06월 21일
회 의	제17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

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하여

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(이하 유가보조금)

-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

소요재원 및 지원체계

- 소요재원 : 지방세법 제196조의16 규정에 따른 주행세
- 지원체계
 - 안분요청(년초) : 지자체 ⇒ 국토해양부
 - 안분(매월) : 울산광역시(특별징수의무자) ⇒ 지자체

지급대상 및 단가

- 지급대상 :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(허가) 또는 등록된 버스, 택시, 화물자동차
 - ※ 평창군 - 303대[화물자동차(153대), 택시(137대), 버스(13대)]
- 지급단가 :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한 금액
 - 버스(경유) : 13대, 368.46원/ℓ
 - 택시(부탄) : 137대(개인-65,법인-72), 197.97원/ℓ
 - 화물(경유) : 152대(일반-30,개별-97,용달-25), 334.97원/ℓ

유가보조금 지급 추진상황

(단위:천원)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 (5월분까지)
예산액	507,730	753,883	856,813	720,743	700,000	300,000
지출액	507,730	753,883	738,658	634,961	634,834	280,968